

#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이것만은 꼭! 확인하세요



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  
팜페라 테너 임형주

## ☑️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.

- 신청대상 :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(1급, 2급, 3급 중복지)
- 수급자격 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)이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00만원, 부부가구 160만원) 이하인 분
- 급여액(기초급여 + 부가급여)

(단위 : 원)

구분	합계		기초급여	부가급여	
	만18세~만64세	만65세 이상	만18세~만64세	만18세~만64세	만65세이상
생계·의료급여수급자	284,010	284,010	204,010	80,000	284,010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	274,010	70,000	204,010	70,000	70,000
차상위초과	224,010	40,000	204,010	20,000	40,000

## ☑️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.

- 신청대상 :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(3급, 4급, 5급, 6급)
- 수급자격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급여액

(단위 : 원)

구분	생계·의료급여수급자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	보장시설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)
장애수당	40,000	40,000	20,000

## ☑️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.

- 신청대상 : 만 18세 이상의 중증(1급, 2급, 3급 중복지)·경증(3급, 4급, 5급, 6급) 장애아동
- ※ 만18세 ~ 만20세로서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) 중인 분은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수급
- 수급자격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급여액

(단위 : 원)

구분	생계·의료급여수급자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	보장시설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)
중증 장애아동수당	200,000	150,000	70,000
경증 장애아동수당	100,000	100,000	20,000